

부산광역시사하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3. 12. 23. ----- 사하구청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03. 12. 23.
- 다. 상 정 일 자 : 2003. 12. 24.(제116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상정, 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사회복지과장 정석한)

가. 제안이유

- 2003. 7. 1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담당업무가 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에서 여성청소년업무담당주사로 변경됨에 따라 사하구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간사를 변경하고 여성발전기금 회계관계공무원을 변경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사하구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간사 명칭 변경(안 제5조제6항)
- 사하구여성발전기금의 효율적 운용·관리를 위한 기금출납원을 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에서 여성청소년업무담당주사로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을 변경함  
(안 제10조제1항제2호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

- 본 조례 개정건은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직제개편에 맞게 업무분장을 조정한 일련의 조치사항이며, 특히 2003. 7. 1 개정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므로 조례개정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 론 요 지 : 생략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